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대는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과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 되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라 약칭 한다)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Solidarity in Korea(약칭 DDASK)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장추련의 주 연락 사무소는 기획분과가 소재한 단체로 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일상의 업무를 공유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단체) 장추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된다.

1. 회원 7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비법인 장애인단체
2. 장추련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인권·노동 관련 제 단체

제5조(가입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연대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성단체 자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추련의 기본목적과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서 가입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권리) 구성단체는 장추련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 구성단체는 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가 공식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상임집행위원회는 구성단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분담금 납부유예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구성단체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단체
2. 6개월 이상 구성단체 분담금을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은 단체

제9조(기구) 장추련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위원회
2. 상임집행위원회

3. 법제정전문위원회
4. 실무분과위원회
5. 기타 단기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신설된 특별사업추진단

제3장 상임공동대표

제10조(상임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그룹에서 각 1인씩 선출하며 대외적으로 장추련을 대표한다.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3. 중증장애인분야
4. 장애여성분야
5. 위 각 호 이외의 구성단체

제4장 집행위원회

제11조(구성) 집행위원회는 각 구성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구성한다.

제12조(역할과 기능) “장추련”의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추련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장추련이 제출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의결
3. 운영규정의 의결 및 개폐
4. 상임공동대표의 선임 및 해임
5. 상임집행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구성단체 자격상실의 의결
8. 상임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전 승인
9. 기타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3조(회의소집)

- ① 재적 위원 1/3 이상이나 상임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운영상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 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위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원 또는 대리인은 그 권한의 증명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정족수)

- ① 장추련 법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장추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상임집행위원회

제16조(구성)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그룹별로 선출된 각 3인과 실무분과장 4인, 법제정 전문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인)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3인)
 3. 중증장애인분야 (3인)
 4. 장애여성분야 (3인)
 5. 위 각 호 이외의 구성단체 (3인)
- ②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 및 분야에서 위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제17조(기능과 역할)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무분과장의 승인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3.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결산안 심의
4.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선출
5. 장추련 법안의 심의
6. 구성단체 자격상실 심의
7.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8조(회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나 기타 운영상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법제정전문위원회

제19조(법제정전문위원회)

- ① 법제정전문위원회(이하 '법제위'라고만 한다)는 상임집행위원회 산하에 두며,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② 법제위원장은 법제위에서 선출한다.
③ 법제위는 장추련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며, 법안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④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 및 자문단을 위촉 할 수 있다.

제7장 실무분과위원회

제20조(구성)

- ① 사업의 집행을 위해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분과 : 사업기획, 예산집행, 총괄
 2. 조직분과 : 회의소집, 조직강화 및 교육, 인력동원
 3. 홍보분과 : 보도자료, 대외창구, 외부홍보의 조정 및 활성화, 웹서비스
 4. 대외협력분과 : 외부인적·물적 자원의 유입, 외부연대, 국제협력 등 교류사업
- ② 실무분과를 총괄 지휘하는 분과장은 상임집행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③ 실무분과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다.

제8장 정치적 입장

제21조(정치적 입장)

- ① 상임집행위원과 법제정전문위원장은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②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한 대정부입장에 있어서 장추련은 다음 각 호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
1. 구성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추련에 대표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개별적인 접촉은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구성단체들과 협의하여 장추련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의원입법을 기본으로 하되,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장 재정

제22조(재정) 장추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 분담금
2. 특별회비
3. 후원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제23조(보수의 제한) 장추련의 각 위원, 실무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행비, 숙박비 등 장추련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경비)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해산

제25조(해산) 장추련의 해산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공포하는 날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혹은 확대 재편에 대한 논의할 수 있으며, 해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의결 이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